# KOSHA GUIDE C - 52 - 2016

상의 휴식시간을 작업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
### 8.2 건강관리 사항 등

- (1)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 심신상태를 점검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비상구급 약품을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(3) 주간보다 기온이 강하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근로자의 체온이 유지 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.
- (4) 소음·진동 및 비산먼지의 노출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작업환경개선을 하여야 한다.

## 9. 야간작업 안전조치

### 9.1 화재예방

- (1) 사업주는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과전류 및 과열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소화기 및 소화기구 등 필요한 소화설비와 방독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하고 비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3) 기온 강하시에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
## 9.2 신호방법

- (1) 작업시 반드시 신호수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신호방법은 유·무선 통신이나 발광체를 이용한 수신호로 하되 작업여건에 따라 병행 또는 선택하여 신호할 수 있다.